

전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100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 고 1.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733,857원과 그 중 19,733,725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1. 3. 5.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A가 2019. 4. 21.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5. 22. 접수 제47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과 2019. 5. 22. 접수 제4796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A가 2019. 4. 21.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같은 등기와 2019. 5. 22. 접수 제47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A가 2019. 4. 21.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같은 등기와 2019. 5. 22. 접수 제47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를 선택하였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28. 피고 A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를 대위하여 2020. 1. 22.경 E조합에 대출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합계 19,733,857원(대위원금 19,733,725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편 피고 A가 위와 같이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2019. 4. 21. 부친 F의 사망에 따라 자신이 상속받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피고들과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는데, 피고 A와 나머지 피고들이 체결한 위 각 상속계약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고 A의 사해의사와 나머지 피고들의 악의는 모두 추정되므로, 위 각 상속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마친 주문 제2, 3, 4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1)

판사 최치봉

별지

1)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넘겨주거나 나머지 피고들이 그들의 각자 상속지분을 정당하게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 A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금 지급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한편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피고 A의 이러한 주장을 원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